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06. 02.(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5. 1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0. 5. 20.

라. 상정일자 :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0년 6월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봉훈 소통협력관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2019. 8. 5.시행)으로 간행물 심의 관련 업무의 담당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대변인에서 소통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대변인” 에서 “소통기획담당관”으로 변경(안 제6조)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란 “대변인”을 “소통기획담당관”으로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2019. 8. 5. 시행)으로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의 담당부서가 대변인실에서 소통기획담당관실로 변경됨에 따라 담당부서와 연계되는 당연직 등 세부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6조제2항)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변경

- 안 제6조제2항은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의 담당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당연직 부위원장을 “대변인”에서 “소통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안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대상자 변경

- 안 별지 제1호 서식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간행물발간심의 요구서 서식으로 담당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참조 대상자를 “대변인”에서 “소통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2019. 8. 5. 시행)으로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의 담당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관련 조항 및 서식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당연직 위원에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위촉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통협력관)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민경서 의원 원안동의 발의

가. 찬 성 : 7명(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변인”을 “소통기획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간행물발간심의요구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심의위원장
참　　조 : 소통기획담당관

<table>
<tr><td>간 행 물 명</td><td colspan="2"></td></tr>
<tr><td>발 간 목 적</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발 간 개 요</td><td>· 지질 :</td><td>· 색도 :</td></tr>
<tr><td>· 규격 :</td><td>· 수량 :</td></tr>
<tr><td>· 면수 :</td><td>· 소요예산 :　　천원
(1부당원가 :　　원)</td></tr>
<tr><td>발 간 내 용</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광 고 게 재</td><td colspan="2">· 광고게재 :　　면,　　미게재 :　　면</td></tr>
<tr><td colspan="2">· 광고료감면여부 :</td></tr>
<tr><td rowspan="3">보 급 계 획</td><td>· 유상보급 :　　부</td><td>· 무상보급 :　　부</td></tr>
<tr><td colspan="2">· 보급시기 :</td></tr>
<tr><td colspan="2">· 보급대상 :</td></tr>
<tr><td>판매장소지정</td><td colspan="2">· 직접판매장소(구체적 장소기재) :</td></tr>
<tr><td colspan="3">첨부　1. 간행물 발간계획 13부.
2. 소요예산산출명세서 13부.</td></tr>
</table>

발신 :　○ ○ ○ 장　(서명 또는 직인)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대변인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회계담당관, 아동청소년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홍보물 제작 관련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소통기획담당관--- ---------- ---------- ---------- ---------- ---------- ---------- ---------- ----------.